

해외경쟁정책동향

• 본 연합회 •

미 국

가격담합에 참가한 한국인 미국에서 징역형

연방법무부는 4명의 한국인을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가격의 국제적 담합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법무부의 DRAM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4개 회사와 9명의 개인들이 기소되고 총 731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번에 구속되는 4명의 한국인들은 그들이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와 미국 및 유럽지사에서 종사하는 동안 가격담합에 참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5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Alberto R. Gonzales 검찰총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적 가격담합에 참가하여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개인들은 그가 어디에 체류하든지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간에 기소하여 징역형을 받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은 또한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도 물기로 했으며, 향후 독점금지국의 DRAM 산업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미국의 재판관할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강제 추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징역형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하면 행해지게 된다.

이들 가격담합자들은 (1)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DRAM 가격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사들과의 회의, 회합 또는 연락에 참가했으며, (2) 특정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DRAM 가격에 대해 경쟁사들과 합의를 했고, (3) 합의된 바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4) 합의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고객들에 대한 DRAM 판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연방법무부는 급락하던 DRAM 가격이 200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128메가 제품이 4배로 오른 데 이어,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는 128메가 DDR 가격이 2배로 급상승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와 같은 가격 급등에 사업자간 담합이 작용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2002년 기준 DRAM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2.1%로 가장 높고 마이크론이 18%, 인피니온이 12.9%, 하이닉스가 12.7%였다. 2003년 말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피니온 등 3개 사업자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상 사면을 받았다. 이후 인피니온이 2004년 9월 1억 6천만 달러, 하이닉스가 2005년 4월 1억 8천 5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물었다. 삼성전자도 2005년 10월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사업자들이 벌금을 물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담합에 참가한 임원 개인을 기소함에 따라 미국내 시장에서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가격담합자들에 대한 복역기간은 불법적인 카르텔 행위를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다”고 Thomas O. Barnett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조치는 카르텔에 참가한 자들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 3. 1. 연방법무부

일본기업, DRAM 가격카르텔 참가에 대해 유죄답변을 할 것에 동의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이하 DRAM)의 일본 제조업자인 Elpida Memory Inc.가 DRAM 시장에서 국제적인 가격카르텔에 참가한 것에 대해 유죄의 답변을 하고, 8,4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했다고 법무부는 발표했다.

금일의 소추를 포함해 4개사 및 5명의 개인이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의 진행중인 DRAM 업계에서의 가격카르텔 심사의 결과로서 총 7억 3,000만 달러의 벌금이 과해졌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금일 제기된 소송에 의하면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Elpida는 다른 DRAM 제조업자와

공모하여 특정의 PC 및 서버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DRAM에 대해 가격 카르텔을 행하였다. 가격카르텔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PC 제조업자는 다음과 같다 ; Dell Inc., Compaq Computer Corporation, Hewlett-Packard Company, Apple Computer Inc.,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및 Gateway Inc.이다. 게다가 Elpida는 다른 DRAM 제조업자와 공모하고 2002년 3월에 Sun Microsystems Inc.에 판매된 로트(lot)의 입찰에 대해 담합을 하였다. 연방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답변협정에 있어서 Elpida는 진행중인 다른 DRAM 제조업자에 대한 심사에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Elpida와의 답변협정이 유효하게 되는 대로 법무부는 Elpida의 전신회사(corporate predecessors)인 NEC Corporation 및 Hitache Ltd.와도 협력 및 비소추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금일의 소추는 미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카르텔의 소추 및 방지에 대한 법무부의 지속적인 참가를 증명하는 것이다」고 법무부 Thomas O. Barnett 반트러스트국장대행은 언급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카르텔의 하나인 DRAM 카르텔의 또 다른 참가자를 범정에 세운 것에 대해 만족한다」.

DRAM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메모리 제품으로, 컴퓨터, 전기통신 및 소비자용 전기제품 각종

을 위한 전자정보의 고속집적 및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DRAM은 PC,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서버, 프린트, 하드디스크 장치, 정보휴대단말(PDA), 모뎀, 휴대전화, 데이터통신 허브 및 router, 디지털카메라, 비디오리코더 및 TV, 디지털셋톱박스(쌍방향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용 통신단말), 게임기기 및 디지털음악플레이어에 사용되고 있다. 2004년 미국에서 DRAM의 매출 총액은 약 77억 달러였다. Elpida는 세계에서 제5위 규모의 DRAM 제조업자이다.

Elpida는 다음의 행위와 같은 가격 카르텔을 함으로써 기소되었다.

- 미국과 그 밖에서 경쟁업자와 특정 고객에게 판매하는 DRAM의 가격을 논하기 위한 회합, 논의 및 연락에 참가한 것
 - 이러한 회합, 논의 및 연락하는 동안 특정 고객에게 판매되는 DRAM에 일정 등급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한 것
 - 도달한 합의에 따라 가격견적을 작성한 것
 - 합의된 가격의 엄수를 감시 및 강요할 목적으로 특정 고객에게 DRAM의 판매에 대한 정보교환 한 것
- Elpida는 다음의 행위와 같은 입찰 담합을 함으로써 기소되었다.
- 미국과 그 밖에서 경쟁업자와 Sun이 한 입찰을 할당(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한 합의, 논의 및 연락에 참가한 것

- 이러한 회합, 논의 및 연락하는 동안 Sun이 한 입찰을 할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
 - 도달한 합의에 따라 Sun이 한 입찰을 할당함으로써 Sun에 대해서 경쟁적인 가격을 거부한 것
 - Sun이 행한 특정의 DRAM 제품을 1로트 구입하기 위한 입찰에 관해 예상되는 입찰(prospective bids)의 제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한 회합, 논의 및 연락에 참가한 것
 - 이러한 회합, 논의 및 연락하는 동안 협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조입찰(complementary bids)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
 - 1로트의 특정 DRAM 제품의 입찰에 보조입찰을 제출, 그리고 Sun에 대해 경쟁적인 가격을 거부한 것
「Elpida는 DRAM 업계에서 반트러스트 위반사건 심사에 있어서 가격 카르텔의 소추에 대해 유죄답변에 동의한 4번째 기업이다. Elpida는 DRAM 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심사에 가치 있는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고 Scott D. Hammond 반트러스트국 형사담당차장은 언급했다.
- 2004년 10월 독일 제조업자 Infineon Technologies AG는 DRAM 카르텔에서의 자사의 역할에 대해 유죄답변을 하고, 1억 6,0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령받았다. 2005년 5월 한국 제조업자 Hynix Semiconductor Inc.는 유죄답변을 하고,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령받았다. 2005년 11월 한국 제조업

자 Samsung Semiconductor Inc. 및 모회사인 Samsung Electronics Company Ltd.는 유죄답변을 하고 3억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령받았다.

2004년 12월 Infineon의 4명의 임원, Infineon Technologies의 T. Rudd Corwin, Peter Schaefer, Gunter Hefner, Heinrich Florian은 DRAM의 가격카르텔에 대해서 유죄답변을 하였다. Infineon의 종업원들은 4~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고,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제소된 Infineon의 종업원 중에서 3명은 독일 시민이다.

2003년 12월 법무부는 사법방해죄로 Micron Technology 지역판매 매니저인 Alfred P. Censullo를 기소하였다. Censullo는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2002년 6월에 Micron Technology에 송달된 대배심 소환장에 대한 서류의 은폐 및 변경한 것을 인정하였다. Censullo는 6개월의 자택근신을 명령받았다.

금일의 제소는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사무소 및 샌프란시스코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집행되는 진행중인 심사의 결과이다.

2006. 1. 30.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연방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절차 개정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 위원장인 Deborah Platt Majoras는 FTC

의 일련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Hart-Scott-Rodino 사전 기업결합 신고법(이하 HSR법)상의 “second requests”와 관련하여 조사를 완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차 리퀘스트는 HSR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간의 대기기간 후에도 결합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발동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FTC의 기업결합 조사 과정의 공식적 구성요소로서 훌륭한 실무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고 위원장은 말하면서, 또한 “개정안은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하게 하고, 2차 리퀘스트의 준비와 일관된 조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결합 조사 과정에 관한 주요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FTC는 (1) 당사회사들이 특수한 조건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2차 리퀘스트에 대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직원들의 숫자를 제한한 것이고, (2) 2차 리퀘스트에서 당사회사들이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할 것이며, (3) 당사자들이 서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업 테이프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고, (4) 당사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HSR법은 미국 독점금지법에서 기업결합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은 FTC와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업결합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자 서류 및 기업결합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들이 증가함에 따라 2차 리퀘스트에서 드는 비용들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FTC 위원장은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FTC가 행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고, 2차 리퀘스트에서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돌리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6. 1. 16. 연방거래위원회

미 국

유럽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에 2004년 결정의 불이행에 관한 강제이행금(daily penalty)에 대해 경고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4년 3월의 결정에서의 의무 중 몇 가지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동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워크그룹 서버 OS 시장 및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동

사의 PC OS 시장에서의 독점에 가까운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배적지위 남용을 하여 EC조약 제82조에 위반했다고 인정하였다. 결정에 의해 과해진 시정조치 중 한 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非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워크그룹 서버가 윈도우즈 PC 및 서버와 완전하게 상호운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인터페이스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의고지서는 감시수탁자(Monitoring Trustee)로 부터의 두 개의 보고서에 의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상호운용성 정보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정확한 내역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유럽위원회의 예비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의고지서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제공한 후 강제이행금(daily penalty)을 과할 가능성이 있다.

Neelie Kroes 경쟁담당위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의무를 준수할 모든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식 루트를 거쳐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2004년 3월의 결정에 의해 과해진 의무는 유럽제1심법원이 잠정적 조치(interim measures)에 대한 MS의 요구에 대한 검토로 일시정지되었지만, 당해 소송은 2004년 12월 22일 유럽제1심법원에 의해 각하되었다. 그날 이후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

프트와 준수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였으며, 상호운용성과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에 대해 시장테스트를 하였다. 시장테스트 결과에 비추어 보아 유럽위원회는 2005년 11월 10일에 1/2003호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제24조제1항 결정」). 동 결정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12월 15일까지 ① 완전하고도 정확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그리고 ② 당해 정보를 합리적인 조건에서 이용가능하게 할 것을 소홀히 한 경우 동 사에 매일 2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하는 강제이행금이 과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제24조제1항 결정」후,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개가 의무시 되어지는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당해 정보는 불완전하고도 부정확하다는 예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동 견해는 감시수탁자에 의한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에는 「실제의 개발을 위해 『기술문서』를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어떠한 프로그래머(programmer)와 프로그래밍 팀(programming team)도 동 문서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 문서는 이 단계에서 의도된 목적에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동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설명과 상세함의 수준, 상세함에 있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동

문서를 사용하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무익한 것이며, 불안을 일으키고,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작업이다. 동 문서를 유효한(workable)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감시수탁자인 Neil Barrett 교수는 컴퓨터 과학 전문가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후보자리스트 중에서 유럽위원회가 임명하였다. 교수는 유럽위원회의 2004년 3월 결정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준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유럽위원회에 공평한 조언을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이의고지서에 답하기 위해 5주가 주어지고, 구두 청문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후 회원국 경쟁당국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자문 후, 유럽위원회는 1/2003호 규칙 제 24조제2항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2005년 12월 15일부터 제 24조제2항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 매일 제재금을 과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을 준수할 때까지 날마다 강제이행금을 과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다.

제24조제1항 결정에서 강조된 2번째 문제, 요컨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조건에서 이용가능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럽위원회는 현재 감시수탁자로부터의 조언을

받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제출된 추가정보를 평가하는 것이다.

2005. 12. 22. 유럽위원회 발표문

유럽위원회, 정기선동맹(liner shipping conference)의 적용 면제 폐지를 제안

유럽위원회는 제한적 사업활동을 금지한 경쟁률인 EC조약 제81조의 정기선동맹에 대한 일괄적용면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일괄적용면제는 이사회규칙 4056/86호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운송회사가 가격을 설정하고, 수송력을 제한하는 것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적용면제를 폐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수송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EU의 수송업자에게 이익이 된다. 이 점은 EU 산업의 경쟁력의 강화가 되며, 리스본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으로 해상 부정기화물선(tramp) 및 연안항행(cabotage) 서비스는 경쟁법 시행규칙(규칙 1/2003호)의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 분야에도 유럽위원회가 경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사회규칙 4056/86호를 폐지한다는 동 제안은 현재 다수결에 의한 채택을 위해 EU 각료이사회에 송부되고, 또한 협의를 위해 유럽위원회에 송부되었다. 채택후 유럽위원회는 경쟁률을 동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다.

본 제안을 담당하는 Charlie McCreevy 위원은 「유럽의 해운업은 강력하며, 경쟁적인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는 해운업자도 다른 모든 분야와 동일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는 EU 경제에 대한 이익을 위해 즉각 동 제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정기적이면서 예정된 해상화물수송을 제공하는 정기선운송은 1870년대부터 카르텔의 형태로 조직되어, 정기선동맹이라고 불리어 왔다. 그들은 특정 경로에 있어서 컨테이너 서비스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운항하고 있다. 정기선동맹의 보호자는, 정기선시장은 독특하다고 주장하고, 경쟁법의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괄적용면제가 유효한 이 20년 사이에 시장은 크게 변화하였다.

일괄적용면제는 규칙으로 정해진 요건에 합치하는 한 관련하는 협정이 EU경쟁법과 양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EU경쟁률은 제한적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플러스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보다 가치있다는 점, 그래서 그 이득의 공평한 분배가 소비자에게도 미치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규칙 4056/86호를 재검토하고, 일괄적용면제를 부여하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일괄적용면제의 재검토는 수송업 자유화의 가속화를

위해 유럽위원회에 요구한 2000년 리스본 유럽이사회 결정에서도 단언되었다.

정기선운송은 EU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해양으로부터의 EU 역외거래의 40%는 정기선에 의해 수송되며, 육상, 해상 및 항공로에 의한 전 수입의 18%, 전 수출의 21%에 상당한다. 그러나 정기선동맹은 일괄적용면제가 설정되어 있어 이익들이 소비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위원회가 행한 영향평가에 의하면 일괄적용면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송비 저하가 예상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해운업 자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서비스의 질과 혁신의 향상)가 예상된다.

해운회사가 경쟁적인 시장을 채우기 위한 시간을 주고, 회원국이 자국의 국제적인 업무를 재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일괄적용면제의 폐지는 이사회가 결정을 채택하고 나서 2년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와 정기선업계는 정기선 동맹체도의 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현재의 일괄적용면제가 폐지된다면 유럽위원회는 정보교환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해상수송 분야에 있어서 협력에 대한 경쟁률 적용의 방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것은 보다 경쟁적인 환경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울 것이다.

2007년말까지로 제안된 가이드라

인에는 독립한 데이터 참고, 사업자 단체 및 사업자포럼의 창설, 가격지표, 요금 및 추가요금의 공통방식의 발행이라는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수송력 이용상황의 적시이고 또한 정기적인 교환 및 공표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정기선 분야에 어떻게 경쟁률을 적용할지를 설명할 것이다. 중간단계로서 유럽위원회는 2006년 9월에 정기선 운송에 관한 논점을 공표할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해상 부정기 화물선(tramp) 및 연안항행(cabotage)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해상 부정기화물선(tramp) 서비스는 정기적이지 않은 비컨테이너 적하(積荷) 해상수송이며, 석유, 농산품 및 화학제품의 수송과 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연안항행(cabotage) 서비스는 단일 회원국의 항구간의 해상수송 서비스이다. 경쟁법의 공통 시행률인 이사회규칙 1/2300호 하의 이러한 서비스를 가져올 제안은, EU경쟁률이 이미 이러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변경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이러한 분야와 시행규칙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모든 분야와의 취급의 평등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해상 부정기화물선(tramp) 서비스에 대한 EU 경쟁률의 적용을 포함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개시하

였고, 부정기선 운송시장의 특징에 관한 연구를 할 것이다.

2005. 12. 14. 유럽위원회 발표문

유럽제1심법원, 벨기에 맥주시장에서 카르텔이 존재했다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지지

유럽제1심법원은 벨기에 맥주시장에서 카르텔이 존재했다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Danone사에 관하여 점차 악화해 가는 상황이 존재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제재금을 4,404만 3,000유로에서 4,241만 2,500유로로 감액하였다.

이사회 17호 규칙¹⁾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EC경쟁법에 위반한 기업과 사업자단체에 대해 제재금을 과할 수 있다. 제재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할 수 있다.

실질적인 (위반이 행해진) 기간중 Interbrew사 및 나중에 Danone사의 자회사가 된 Alken-Maes사는 벨기에 맥주시장에서 업계 1위 및 2위 기업이었다. Danone사는 프랑스 맥주시장에서도 사업을 해왔다.

2001년 12월 5일, 유럽위원회는 이들 3개사가 벨기에 맥주 판매시장에서 카르텔에 참가했다고 하는 결

1) EC조약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최초의 규칙, 1962년 2월 이사회규칙 17호

정을 채택했다. 그것과 관련하여 Danone사에게는 자발적인 카르텔 참가, 그리고 Alken-Maes사의 카르텔에 참가한 양쪽 모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음으로 유럽 위원회는 4,404만 3,000유로의 제재금을 과했다. 제재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럽 위원회는 Danone사가 Interbrew사에 대해, Danone사에 대해 벨기에 시장에서 50만 헥토리터(100리터)의 맥주판매를 거부한다면 프랑스 시장으로부터 Interbrew사를 퇴출시킨다는 압력을 가한 것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그 압력과 Interbrew사의 반경쟁적 자세의 발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Danone사는 제1심법원에 대해 위원회 결정의 취소 또는 제재금의 감액을 요구하였다.

금일 제1심법원의 판결에서는 Danone사 주장의 대부분이 각하되었다.

그러나 Danone사가 Interbrew사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은 당해 압력과 카르텔 확대와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 유럽위원회는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만족시킬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확장의 요인으로서 압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카르텔은 양사가 함께 경쟁을 배제할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행해진 것이다. 결과로서 유럽위원회가 Danone

사에 대해 인정한 악화시키는 요인은 틀린 것이었다.

잘못된 사실인정에 의해 제재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제1심법원은 Danone사의 제재금을 4,241만 2,500유로로 감액하였다.

2005. 10. 25. 유럽사법법원 발표문

독 일

연방카르텔청, RTL과 n-tv에 대해 경고

연방카르텔청은 RTL Television (이하 RTL)사가 n-tv 뉴스 채널(이하 n-tv)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하여 경고했다. RTL은 이미 n-tv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CNN/Time Warner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50%의 주식도 취득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독일내 TV 광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시장에서 RTL, VOX, Super RTL 및 n-tv 채널을 가지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RTL 그룹은 이미 ProSiebenSat.1 미디어사와 공동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 연방 카르텔청의 이제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n-tv의 나머지 주식 50%도 RTL이 소유하는 경우 그 시장지배적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공동 지배를 받아오던 n-tv가 신고된 대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RTL 그룹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 RTL 그룹은 n-tv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RTL 그룹은 모든 경영판단을 CNN/Time Warner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시장이나 사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 분야의 특성 때문에, 이번 기업결합을 허가한다면 RTL 그룹과 ProSiebenSat.1 그룹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과점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2006. 2. 6.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Springer와 ProSiebenSat.1의 합병을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Axel Springer AG(이하 Springer)와 ProSiebenSat.1 Media AG(이하 ProSiebenSat.1) 사이의 기업결합을 금지키로 했다. 연방카르텔청장의 말에 따르면, 이 기업결합은 TV 광고 시장, 가판용 신문 독자 시장 및 국내 신문 시장에서 경쟁법상 심각한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ProSiebenSat.1와 Bertelsmann

그룹에 속해 있는 RTL TV 그룹에 관한 연방카르텔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둘은 TV 광고 시장에서 지난해 평균 약 4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이른바 외부와의 실질적인 경쟁이 없는 경쟁이 불가능한 독점 상태에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또한 국내 가판용 신문 독자 시장에서 Springer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다. Springer가 발매하고 있는 일간지인 BILD는 이 시장에서 80%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Springer는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되는 경우 미디어간의 융합을 통해 BILD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신문 광고 시장에서도 Springer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장에서 이미 Springer는 BILD와 Die Welt의 발간을 통해 4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중이다.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Springer는 출판이나 방송 어느 한 분야에서 만들어진 광고물을 다른 매체에서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광고시장에서의 Springer의 지배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연방카르텔청은 판단했다.

이에 Springer는 BILD라는 브랜드를 TV 광고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함께 Pro-Sieben/Sat.1 TV 프로그램 광고 시장을 Springer의 광고업주와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카르텔청에 제안했다. 그럴 경우 이러한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인가조건 감독을 맡고 있는 각 주의 미디어규제당국이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러한 인가 조건은 행태규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법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6. 1. 24.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장기간의 가스 공급계약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E.ON Ruhrgas AG(이하 E.ON)가 배급업자들과 맺은 장기간의 가스 공급계약을 금지했다. 공식적인 금지 결정에서 연방카르텔청은 E.ON에게 배급업자들과 체결한 그와 같은 가스 공급계약은 장기간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EU 및 독일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 금지 결정에서는 E.ON이 그러한 관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금지 결정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장기 공급계약에 의해 가스 배급업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봉쇄 효과와 가격인상 효과를 가진다. 이는 신규 진입을 막으며 수년 동안 제3자에 의한 가스 공급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은 E.ON이 가스 배급업자들과 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양의 80%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러한 계약들은 빨라도 2006년 9월 30일이나 종료될 예정이었다.

각 지역 배급회사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들에서는 실제 필요한 가스량의 50% 이상을 4년 이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나 실제 필요량의 80%를 2년 이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계약들이 EU경쟁법에 위반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 배급량이 일정 수준(200 GWh) 이하인 가스 배급업자들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제외된다.

E.ON과 지역 가스 배급업자들(통상 공공사업자)과의 계약들만 이러한 (금지)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수입 부문, 즉 가스 수입업자로서의 E.ON과 가스 생산자들과의 구매 계약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 산업용 가스 구입업자나 가스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나 대규모 공장 등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장기 공급계약이 금지되지 않는다.

연방카르텔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방카르텔청에서 금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위협이 있자, E.ON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2008년 이후의 계약이나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에 연방카르텔청은 E.ON의 제안이 가스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ON은 이미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장은 “법원에서 이번 장기 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나는 그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의한 장기 공급계약을 금지시키고 차별금지를 보장함으로써 경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가스 요금은 인하될 것이다”고 말했다.

2006. 1. 17. 연방카르텔청

E U

EU위원회, 스페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 규정 관련 성명서 발표

EU위원회는 스페인 통신사업자인 Telefónica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EU 경쟁법 제82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송했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공식 조사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Telefónica가 지난 2001년부터 스페인 광대역 인터넷 접속시장에서 이른바 ‘이윤압착(margin squeeze)’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명서의 전달이 곧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원회는 Telefónica에서 보내온 답변서들에 기초하여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위원회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2001년 이래 Telefónica가 경쟁사들에게 제공하는 광대역 접속 도매 요금과 소비자들에게로부터 받는 다운스트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요금과의 차이가 소매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elefónica가 그의 경쟁사들에게 부과한 도매 요금을 지불했다면 실질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른바 ‘이윤압착’이라고 한다. Telefónica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접속을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다운스트림 소매 가입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윤만을 남겨 놓는 것이다. Telefónica는 스페인 국가 전역에 걸쳐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다.

스페인 광대역 소매 요금은 높아서 EU 평균 요금보다도 높다. 또한 스페인에서의 대체적 인프라는 EU 회원국들 평균보다는 뒤쳐져 있는 편이다. 비록 가입자망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가 2004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에 못 미치고 있다.

다른 EU 회원국들의 경험을 보건 대, 불공정한 요금으로 나타나는 시

장지배적 지위를 막는 경우 경쟁이 활성화 되어 요금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 2. 22. EU위원회

일 본

일본carbon, 국제적인 흑연전극 카르텔 참가에 대해 유죄 답변

금일 경쟁국은 일본carbon이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흑연전극의 국제적인 가격카르텔을 방조한 것에 대해 캐나다 연방지방법원에 유죄답변을 하고, 10만 달러의 벌금이 과해졌다고 발표했다.

1992년 5월부터 1997년 6월에 걸쳐 흑연전극의 제조업자들은 흑연전극의 가격을 고정하고, 아울러 세계 시장을 분할하고 분할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량에 대해 합의하였다. 동경에 본사를 둔 일본carbon은 상기 기간중 흑연전극을 캐나다 시장에 판매하지 않기로 본 건 공모를 방조하였다.

「일본carbon은 캐나다에서 흑연전극의 경쟁을 감살시키는 가격카르텔을 방조하였다. 경쟁국은 최우선 과제로서 가격카르텔에 참가한 개인과 사업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Denyse MacKenzie 경쟁국 상석부장은 언급하였다.

일본carbon은 캐나다에서 흑연전극 카르텔에 참가함으로써 유죄를 선고받은 7번째 당사자이다. 지금까지 당해 국제카르텔에서의 역할에 대해 UCAR Inc, SGL Carbon Aktiengesellschaft, Tokai Carbon Co, Mitsubishi Corp. 및 UCAR의 2명의 전직 임원인 Robert P. Krass 및 Robert J. Hart에게 합계 2,500만 달러의 벌금이 과해졌다.

2005. 12. 8. 캐나다 경쟁국 발표문

공취위, 큐슈 세이부 운수 주식회사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큐슈 세이부 운수 주식회사(이하 큐슈 세이부 운수)에 대해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제4조제1항제3호(하청대금의 감액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권고조치 했다.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큐슈 세이부 운수는 화물 운송 및 집배 업무 등을 하청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의 기간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청사업자에 대해서 하청대금의 액수에 일정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동의한 하청사업자에 대해서 하청대금으로부터 「가격인하」라고 칭하고 이를 공제함으로써, 하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를 줄이고 있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큐슈 세이부 운수로 하여금 2004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의 사이의 「가격인하」라고 칭해 하청대금 중 감액한 부분 등(총액 1,729만 9,224엔)을 하청업자(130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동시에, 향후 하청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하청대금의 액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취지를 하청업자에게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내 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 내용을 자사의 임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권고했다.

2006. 3. 2.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주식회사 돈·키호테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홋카이도 내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돈·키호테의 5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가방 등 수입브랜드품의 표시에 대하여 조사해 왔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인광고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조치 했다.

주식회사 돈·키호테는 홋카이도 내에 소재하는 「돈·키호테」 5개 점포에서 「GUCCI」 브랜드가 부착된 14 종류의 상품(이하 구찌 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한정수량」이라고 기재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판매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찌 상품 14 종류에 대해 판매를 위해서 준비해 둔 수량을 실제로 보면, 13 종류는 각 점포당 1점씩만 비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1 종류는 각 점포당 2점만 구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판매 수량이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 내용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표시를 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돈·키호테는 이러한 내용의 표시를 일반 일간지에 끼워 넣은 광고지의 형태로 약 22만부를 작년 5월 20일에 배포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유인광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고조치 했다.

2006. 2. 28. 공정취인위원회

정보표시 설비공사의 입찰참가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도로공단(이하 공단), 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이하 관동지정), 중부지방 정비국(이하 중부지정), 킨키(近畿)지방 정비국(이하 킨키지정) 및 추고쿠지방 정비국(이하 중국지정)이 발주하는 정보표시 설비공사의 입찰참가업자 7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일본도로공단은 지난 2005년 10월 1일에 해산되고, 현재는 동일본고속도로 주식회사, 동일본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서일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세이와 전기주식회사 외 2사는 공

단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에 대해서, 안리츠 주식회사 외 6사는 공동지정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에 대해서, 나고야전기공업 주식회사 외 6사는 중부지정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에 대해서, 세이와 전기 주식회사 외 6사는 킨키지정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 공사에 대해서, 코이토 공업 주식회사 외 4사는 중국지정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 공사에 대해서, 각각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한 다음 그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단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란 공단이 지사, 건설국, 관리국 및 그 산하에 설치된 공사사무소, 관리사무소 및 관리소에 있어 공모형 지명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교통정보 설비공사로 발주하는 공사 중 자막, 전구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가변식의 옥외 설치용 정보판, 가변식의 속도 규제 표지 및 그것을 감시제어 하는 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된 설비의 신설 공사 및 개량 공사를 말한다.

「관동지정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 「중부지정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 「킨키지정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 및 「중국지정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 등도 역시 국토교통성이 관동지정, 중부지정, 킨키지정 및 중국지정에 대해 공모형

지명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통신설비 공사로서 발주하는 공사 중 전구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 도로, 하천, 터널, 댐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도로 이용자, 하천 이용자,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 표시판 또는 그 제어기의 설치, 개수, 개조 등의 공사, 전기 정보표시판과 그 제어 기간 또는 그 제어기 상호간의 접속 공사 및 이러한 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말한다.

2006. 2. 7.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건설회사에 대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공정취인위원회는 동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에 대해 2003년 12월 11일 심판 개시 결정을 하고 그동안 심판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06년 2월 3일 피심인에 대해 2005년 개정 전의 독점금지법 제5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535만 엔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피심인 나토 마코토 건설 주식회사는 치바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목 건축공사의 청부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치바시 및 재단법인 치바시 도시정비 공사가 치바시 내에 본점을 두는 사업자만을 지명해 지명경쟁입찰 또는 희망형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사로서 발주하는 설계 금액이 2500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의 공사

에서 수주 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그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치바시 등이 발주한 공사의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과징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실행 기간이 1998년 11월 14일부터 2000년 11월 13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매상액은 5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 대가의 액수를 합계한 1억 7,836만 350엔이다. 이 사건에서는 수주한 공사 5건 중 3건이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문제된 3건은 치바시 등이 발주한 공사에 해당되고, 공사 장소 및 과거 수주 공사와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명업자 중 수주 희망자가 피심인 뿐이었기 때문에, 피심인이 수주 예정자가 되어 다른 업자들의 협력을 얻어 수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3건은 기본 합의에 근거해 수주 예정자가 결정되어 구체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2006. 2. 6. 공정취인위원회